

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「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14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(2022. 8. 22. 개회) 기간 중 심사 및 의결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2년 8월 17일

담양군의회 의장

□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제출기간 : 2022. 8. 17.(수) ~ 8. 21.(일) 5일간

○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, 팩스 등

○ 제출기관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주소 :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담양군의회

- 전화 : 031-350-3516, FAX : 033-350-3590

○ 기재내용

-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연락처

- 그 밖에 참고사항 등

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|
| 의안 번호 | |
|----------|--|

제출연월일 : 2022. 8. 12.

제 출 자 : 박준엽 의원 외 1인

1. 제안 이유

- 지난 제313회 임시회에서 「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으나,
- 각 상임위에서 관장하는 실과소 숫자 등 형평이 맞지 않는 점, 민원 업무가 많은 민원과 업무 속성을 고려할 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소관에 관한 사항을 소폭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업무 속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국 민원과를 현행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변경
(안 제4조제2호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 및 71조

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호 중 “행정국”을 “행정국, 민원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산업안전국”을 “민원과를 제외한 산업안전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제4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자치행정위원회 : 기획예산실, 참여소통실, <u>행정국</u>, 보건소,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</p> <p>3. 산업건설위원회 : 미래성장국, <u>산업안전국</u>, 농업기술센터, 물순환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</p> | <p>제4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<u>행정국, 민원과</u> -----</p> <p>3. ----- -- <u>민원과를 제외한 산업안전국</u> -----</p> |